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윤석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D-652
----------	-------

발의년월일 : 2021. 5. .

발 의 자 : 윤석진 의원 외 11명

1. 제안이유

- 안산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명장 자격요건 및 추천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명장 선정 및 취소, 예우·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입법예고결과 : 붙임4 (의견 있음)

7. 부서 검토의견서 : 붙임5

【붙임1】 제정조례안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산업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시 산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써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2.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사람
3.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4.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 관내 소속 기업체의 장
2. 시 관내 해당직종 협회의 장
3.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선정) ① 시장은 안산시 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명장 선정직종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선정인원은 매년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안산시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숙련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안산시 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산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명장 선정 후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명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
2. 명장 선정계획 및 활성화 시책
3. 위원장이 심의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 업무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숙련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윤석진 의원 대표발의 (행정2503)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652
----------	-------

제안년월일 : 2021년 6월 18일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수정이유

- 명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 관외 이전 시 명장 선정에 따른 지원은 중지하되 명예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함.

주요골자

- “주민등록이 되어” 를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로 수정
(안 제3조제1호)
- “명장 선정 후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삭제 (안 제7조)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주민등록이 되어” 를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로 한다.

안 제7조제3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자격요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p> <p>2. ~ 4. (생략)</p> <p>제7조(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2. (생략)</p> <p><u>3. 명장 선정 후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u></p>	<p>제3조(자격요건)----- ----- ----- ----- .</p> <p>1. ----- ----- ----- 주소 <u>또는 거소를 두고</u>----- -----</p> <p>2. ~ 4. (원안과 같음)</p> <p>제7조(선정취소)----- ----- ----- ----- .</p> <p>1.·2. (원안과 같음)</p> <p><u><삭 제></u></p>